##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37 발의연월일: 2022. 7. 13.

발 의 자:정일영·김두관·김민철

김병기 • 김영진 • 김주영

송기헌 · 양경숙 · 장경태

장철민 · 최종윤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"공공기관"은 국가기관(가목), 지방자치단체(나목)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·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상 '공공기관'에 해당하는지 법령 상 내용이 명확치 않아,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령해석을 달 리 하고 있어 법 조문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례(법제처-22-0401)에서는 '국·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'고 해석하고 있으며,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과 그 하위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범위에 유아교육법과 초·중등교육법, 그리고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국·공립유치원 및 학교, 국·공립특수교육

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(「조달사업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).

이에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"공공기관"에 국·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, 국·공립학교와 국·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·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 진하려고 하는 것임(안 제2조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 신설). 법률 제 호

###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에 사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사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
- 아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·공립유치 원
- 자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·공립 학교
- 차.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·공립학교
- 카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· 공립 특수교육기관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	2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	
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.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사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
	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
	<u>이집</u>
<u>&lt;신 설&gt;</u>	아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1
	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
	<u>· 공립유치원</u>
<u>&lt;신 설&gt;</u>	자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3
	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	<u>국립·공립학교</u>
<u> &lt;신 설&gt;</u>	차.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
	<u>따른 국립·공립학교</u>
<u> &lt;신 설&gt;</u>	<u>카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</u>
	교육법」 제6조제1항에 따
	른 국립・공립 특수교육기
	<u>관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